

충남대학교 대학원 응용화학공학과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시행세칙

[제정 2016.3.16.]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응용화학공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论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논문제출자격)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제4조(논문제출 자격시험의 방법, 응시절차 및 자격요건) ① (응시절차) 학위청구논문(이하 “논문”이라 한다)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시험과목)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하며, 응시과목은 석사학위과정과 학·석사 연계과정은 3과목, 박사학위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.

③ (시험출제기준)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④ (출제위원 및 채점위원) 출제위원으로 학과의 전임교수 중에서 석사학위과정과 학·석사 연계과정은 3인을, 박사학위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은 4인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한다. 또한 원칙적으로 채점위원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⑤ (합격기준)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⑥ (보고) 학과 주임교수는 합격결과를 계열학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논문지도위원회) ① 박사학위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.

② 수료학점 이상 취득예정인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,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④ 박사학위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,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.

제6조(외국어능력 기준)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TEPS 476점 이상

2. TOEIC 600점 이상

3. TOEFL(CBT) 163점 이상

4. TOEFL(iBT) 57점 이상

5. 본교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(영어회화, 토익, 토플) 중 하나를 선택하여 60시간 이상 이수

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③ 공인된 외국어능력시험의 인정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,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.

④ 공인된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학기 정하는 기간에 해당 시험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박사과정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석사과정 중에 충족하여 동일 학과, 동일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제7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 ①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 학술지에 게재 된 사본 혹은 학술지게재 예정 승인확인서[관련 학회지의 기관장 날인분에 권, 호수 및

등재일자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세부자료(권호수 기재사항 등)가 없을 시에는 심사에서 통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]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, 학술지 요건은 각 과정별로, 석사과정의 경우 학진등재(후보)지 1편 이상 혹은 학술발표 2회 이상, 박사과정의 경우 SCI(SCIE 포함)급 1편 이상 혹은 학진등재(후보)지 3편 이상(학진 등재(후보)지 1편은 학술발표 2회와 동등한 것으로 함)으로 한다.

②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.

③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한다.

④ 연구분야 특성상 논문보다 특허가 중요시 될 경우 주임교수가 인정하면 논문을 특허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세칙의 개정)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6학년도 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대학원 학과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입학 당시 소속학과의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학과별 시행세칙을 적용하되, 학생 희망에 따라 소속변경을 할 수 있으며, 입학당시 또는 2016학년도 이후의 학과별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.